

# 공 고

##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-59

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(회선설비 미보유)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(등록취소)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7. 08.

서울전파관리소장

### 기간통신(회선설비 미보유)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

1. 처분대상 : “기간통신(회선설비 미보유)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 내역” 참조
2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
3. 처분내용 :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
4. 처분일자 : 2026.7.1.
5.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
  -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
  - 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(등록취소 등의 기준·절차 등) 및 별표2
6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7. 행정청 담당자 연락처
  - 부서명 :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 행정처분담당  
(☎02-2680-1752, Fax 02-2680-1758)
 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-43 (궁동)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
8. 유의사항
  -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-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- 아울러,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〈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 내역 〉

기간통신사업 등록번호	사업자명	법인등록번호	대표자	주소	사업구분 및 제공역무	처분내용
제1-01-23-0002호	(주)비츠네트웍스	134111-***1644	박*영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***	<b>기간5호</b> (인터넷전화(5호), 재과금(5호))	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
제1-01-22-0040호	주식회사 파인콜	134811-***9751	유*영	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***	<b>기간5호</b> (호집중(5호), 인터넷전화(5호), 재과금(5호))	
제1-06-16-0002호	(주)라이브 정보통신	170111-***0671	이*명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***	<b>기간5호</b> (전화정보(5호))	
제1-01-15-0005호	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	110115-***0898	크라이*** 홀딩스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***	<b>기간5호</b> (호집중(5호), 인터넷전화(5호), 재과금(5호), 인터넷접속(5호), 국내전용화선재임대(5호), 가상사설망(5호))	
제1-01-14-0007호	주식회사 스카이존	280211-***9433	김*성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***	<b>기간5호</b> (인터넷전화(5호), 전화정보(5호))	